

양성평등한 정보사회 추진

수행과제명 · 매체융합 환경에서 여성의 매체 · 정보 이용과 생산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과제책임자 ·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양성평등한 정보사회 추진*

수행과제명  매체융합 환경에서 여성의 매체·정보 이용과 생산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과제책임자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53

 e-mail: lsy4026@kwidimail.re.kr

요약

정보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그 결실이 남녀에게 평등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정보 관련 의사결정 위치에 여성이 최소한 30% 진출하는 등 정보화 정책을 전반적으로 성평등하게 집행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보사회 추진체계와 성평등한 법령이 필요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이수연·안상수·강혜란(2013). 매체융합 환경에서 매체·정보 이용과 생산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 새로운 매체환경에 따른 변화

- 새로운 매체환경은 이용자 유형에 따라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다양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매체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매체·정보 접근, 이용 및 생산 관련해서 남녀 차이도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음.
- 사회의 성별 구조의 변화, 여성 경제 참여 증가, 정보 매체의 속성 변화 등으로 인해 성별 정보 이용의 차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정보의 중요성 증가와 여성의 정보 이용·생산 참여의 문제

- 정보의 경제, 산업, 문화적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정보통신 이용권과 생산권이 시민권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정보 이용과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 양성평등한 정보사회는 정보의 이용과 생산의 효율성이 높음.

▣ 양성평등한 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성립되어야 함

- 양성평등한 정보 이용 환경 조성
 - 여성들이 정보와 서비스 이용을 하는데 장애가 없으며 남성과 동등한 접근성을 갖도록 함.
 - 이는 단말기와 서비스 등의 물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성차별이 없는 온라인 환경에서 심리적, 문화적 장애도 없는 것을 말함.
 - 정보 관련 의사결정 구조를 성평등하게 함.
- 여성의 정보 생산 참여 확대
 - 현재는 정보 이용뿐만 아니라 생산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가 낮음. 이는 소비자 차원에서 커뮤니티,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의

건을 개선하는 것과 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에서 인력으로 참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함.

- 정보, 콘텐츠 산업이 21세기형 주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해서도 정보 산업의 참여가 중요함.

● 여성친화적 콘텐츠 생산 확대

- 정보 이용은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용하겠다는 동기와 욕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 여성들이 접근하고 싶은 정보와 콘텐츠가 한정되어 있을 때 여성의 정보 이용은 활성화되기 어려움. 따라서 여성들이 원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정보 이용을 통한 여성의 사회·정치 참여 확대

- 정보화 시대는 시민이 모든 영역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함. 쇼핑에서부터 선거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정보화 능력은 사회참여 능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침. 정보화 역량 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평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임.

2 조사 및 분석결과

▣ 2013년 현재 성별 정보 격차가 존재함.

● 접근·소유에서의 성별 차이

- 단말기 소유(개인, 가족, 회사 소유)에서의 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 하지만 개인 소유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즉, 컴퓨터와 태블릿PC를 본인이 소유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음(컴퓨터 남성 41.7%, 여성 21.9%, 태블릿PC 남성 66.7%, 여성 34.6%). 회사가 소유한 비율도 남성이 높았는데 이는 남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높은데서 연유할 것임. 반면에 가족소유라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높았음.

● 매체 이용에서의 성별 차이

가. 단말기 이용 빈도

컴퓨터와 태블릿PC의 이용 빈도는 하루 1회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이, 그보다 덜 자주 이용하는 사람의 빈도는 여성이 높아 남성이 훨씬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 반면에 스마트폰과 휴대전화의 이용률은 성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유의미하지도 않았음.

나. 단말기 이용 활동

1) PC 이용활동 성별 비교

PC를 이용한 활동은 정보검색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인터넷 쇼핑, 그리고 이메일 주고받기 등이었음. 인터넷 쇼핑을 제외하고는 모든 활동에서 남성의 활동이 활발한 편임.

2) 스마트폰 이용활동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았음. 먼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문자보내기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SNS 활동으로 나타나 컴퓨터 이용과는 차이가 있었음. 다음으로 스마트폰 이용을 성별로 비교하였음. 여성은 정보 검색, 음악 듣기, 인터넷 쇼핑, 사진 및 동영상 찍기, 메신저 활동, SNS활동에서 남성보다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남성은 이메일 주고받기, 게임하기에서 더 활발하였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여성이 더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음.

다. 매체 이용

1) '종이신문'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자주 이용하였고,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검색'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빈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TV/라디오 방송' 매체나 '인스

- 턴트 메신저'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매체 이용에서는 성별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연령이 증가할수록 '종이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의 이용이 많았던 반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들에서는 젊은 연령층의 이용 빈도가 높았음.
- 2) 인터넷의 이용 경험은 전체적으로 99.8%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연령대별로 보면 40대부터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60대는 99.3%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44.3%인 50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음. 특히 남성은 60대 115명이 모두 그렇다고 답하여 100%의 비율을 보였음.
 - 3) 온라인 서비스 매체들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로서 '인스턴트 메신저'를 꼽은 비율이 69.9% 이었고, '블로그/미니홈피'를 꼽은 비율은 3.9%, '마이크로블로그 및 프로필 기반 서비스' 2.8%, '인터넷방송/UCC 사이트'는 1.9%를 꼽았음.
 - 4)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와 이용활동을 비교했을 때, 남성의 이용활동 중 정보생산적 요소들이 있었음. 여성의 경우 게시물 읽기나 타인공유와 같은 활동 비율이 높은 반면에 남성들의 경우 일상게시물 올리기, 창작물 올리기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정보 생산 활동 양상을 보였음.
 - 5) 커뮤니티 이용 역시 남성이 보다 다양한 영역과 주제의 커뮤니티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커뮤니티 주제 및 내용별로 나누어 이용 정도를 비교했을 때, 친목도모, 취미관련, 경제 관련 커뮤니티 그리고 토론 커뮤니티의 활동이 여성에 비해서 많았음. 여성은 육아/자녀교육 커뮤니티 활동에서만 남성보다 활발했음. 이는 여성이 커뮤니티 이용 상의 다양성이 낮음을 시사함. 반면에 여성의 육아/자녀교육 커뮤니티가 재미적 요소 때문이라거나 시간 보내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보교류, 경제적 도움을 찾는 커뮤니티 활동 동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보였음.

- 6) 커뮤니티를 통한 댓글 올리기 빈도, 활동 커뮤니티의 수 등에서 성별차이는 없었으나, 게시물 작성에 있어서는 젊은 연령층 여성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음.
- 7) 트위터 이용 유무에서 성별차이는 없었음. 아울러 팔로워의 수, 팔로잉 수, 총 트윗의 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유튜브 업로드 빈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소수이나 남성은 4.1%가 올린 적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에 여성은 같은 응답이 1.4%에 불과하였고, 트위터를 이용한 시점에서 성별 차이도 발견됨. 남성이 여성들에 비해서 더 일찍 트위터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성별 정보격차의 양상

정보이용을 접근, 활용과 참여의 기준으로 작동화하여 정보격차를 파악해보았음.

1) 접근

접근은 정보기기의 소유(소유 여부와 소유한 기기의 대수)의 지표로 보고자 함.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보기기 소유는 컴퓨터와 태블릿PC를 자신이 소유한 경우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정보기기 보유대수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음. 이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접근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없어지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2) 활용성

- 활용성은 매체 이용의 다양성과 이용 빈도를 가지고 측정함. 첫째, 매체별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둘째, 매체이용빈도를 봄. 다양성은 매체별로 다르게 나타남. 즉, 컴퓨터를 이용한 활동은 남성이 더 다양하게 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는 여성이 더 다양하게 하고 있음.

- 매체 이용 빈도는 종이신문, 포털사이트, 인터넷 방송, 인터넷 बैं킹에서 남성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음. 반면에 마이크로 블로그, 인터넷 쇼핑은 여성의 이용 빈도가 더 높았음. 인스턴트 메신저는 여성의 빈도가 더 높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경향($p < .10$) 정도만 보임. 커뮤니티, 트위터와 유튜브 이용 빈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이를 종합해 보면 매체 활용에 있어 성별 차이는 한 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성별 격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남성과 여성이 각각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매체가 다르다고 보이고 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도 그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임.

3) 참여

참여는 정보생산활동, 시민 네트워킹과 정치 네트워킹의 정도에 따라 측정함. 정보 생산 활동은 커뮤니티/블로그의 운영, 온라인 게시글 달기,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의 변수로 조작화함. 커뮤니티/블로그 운영은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온라인 서비스(인스턴트 메신저, 블로그/미니홈피, 마이크로 블로그, 인터넷 방송 등)를 사용하면서 게시글이나 창작물을 올리는 비율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유튜브 업로드도 전체적으로 사례가 작고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이처럼 정보생산 활동에서는 커뮤니티/블로그 운영에서만 성별 차이가 존재하였음.

다음으로 시민 네트워킹은 인터넷 중 가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는 장인 커뮤니티의 이용 다양성과 활동내용에서의 차이를 보임. 먼저 커뮤니티 이용의 다양성에서 보면 취미, 친목, 경제, 토론 커뮤니티에서 남성의 참여가 여성보다 높고 여성은 육아/자녀교육에서만 높아 일단 남성이 여성보다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참여한 커뮤니티수나 커뮤니티에 댓글 올리기에서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없음.

정치 네트워킹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 토론과 후보 권유의 정도를 통해 측정함. 먼저 정치 토론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합해서 남성이 두 배 정도 더 많이 하였는데 오프라인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성의 두 배, 온라인 토론방에서는 세 배 많게 정치토론을 하였음. 반면에 인스턴트 메신저에서는 여성이 더 높음. 세 통로를 합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음. 온라인에서 정치 관련 글을 게시한 경험도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 후보권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해서 남성이 높고 온라인만 볼 때도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매체를 통한 정치 네트워킹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활발하게 한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앞의 세 요소의 분석을 통해 보면 참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활발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설문조사를 통해 발견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는 여성의 매체·정보 이용의 양상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사실임. 전반적으로 여성이 단말기 소유나 이용에 있어 남성보다 떨어지는 해도 이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성별 격차가 크기 때문인 이유가 큼. 20대와 30대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인 이용을 하는 모습도 보임. 이처럼 젊은 세대에서는 구태여 정책적 중재를 하지 않아도 여성들이 활발하게 정보를 이용하고 있음. 하지만 40대 이하 젊은 세대 중에서도 최소한의 정보이용을 하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전통매체고수형인 4집단에 속하는 여성들임. 이들은 고학력도 아니지만 특별히 저학력도 아니고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직업이나 환경 상 특별히 정보 이용 동기가 낮고 무엇보다 정보 활용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임. 이처럼 여

성 안에서 차이가 커지고 있을 때 이들 정보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특별한 정책지원이 요구됨.

마. 여성들 사이의 정보격차

- 젊은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매체·정보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의 정보 능력을 직업적으로 연결하여 정보 생산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반면 50대 이상의 고령층 여성과 40대 이하 중 정보취약계층 여성이 존재함. 이들이 정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 성별 정보 격차를 해결하고 반면 능력있는 여성을 정보 생산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보 관련 의사 결정직에 여성이 더 참여하고 양성평등하게 매체·정보를 이용하는 교육을 시키는 등 범부처적인 접근이 필요함.

3 정책제언

제안1) 양성평등 정보화사회 추진위원회 설립

▣ 배경

● 범부처적 양성평등 정보사회 추진 필요

- 여성 정보화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범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임. 여성가족부는 여성 정보화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끌어내야 함. 여성가족부 정책의 특성 중 하나는 부처 간 중재임무임.
- 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과 ‘여성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제 4기(2013~2017)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음. 정보화시대에 정보에서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것은 경제적, 사회

- 적으로 중요한 참여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여성의 정보 역량 강화와 정보 참여 기회 제고는 여성가족부의 중요한 임무임.
- 우선 추진체계가 수립되어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함.

■ 내용

-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범부처 위원회 설립: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함.
- 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필요한 예산은 정보화추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기금을 통해 조달함.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모여 추진할 안건을 결정하고 연말에 정책 수행 결과를 보고 받음.
- 내년 2014년에는 세계 회원국 139개국에서 장, 차관을 포함하여 2,500명이 참석하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세계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가 부산에서 10. 20(월)에서 11. 7(금)까지 3주간 열리게 됨. 이 회의는 1994년 교토회의 이후 아시아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회의로 직, 간접 경제 효과와 취업유발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기대됨. 여기서 우리의 발전된 정보 인프라와 산업뿐 아니라 성평등한 정보 환경과 여성의 정보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홍보한다면 여성대통령의 효과와 함께 강력한 국가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임. 따라서 내년을 대비하여 양성평등 정보사회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몇 가지 단기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중요한 단기과제로서는 매체·정보 관련 위원회 여성비율 30% 확보와 양성평등 정보사회 추진계획 수립 등이 있음.

제안2) 매체·정보 관련 위원회 여성비율 30% 확보

-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요 의사 결정직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의 모든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최소 30%가 되어야 하나 매체·정보 관련 각종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매체·정보 관련 위원회 여성비율 30% 확보는 양성평등 정보화사회 추진위원회의 중요한 안건이 되어야 함.

제안3) 매체·정보 관련법의 성평등한 개정

▣ 배경

- 매체·정보 관련법에 성평등 시각 결여
 - 2008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정보화촉진기본법 등과 통합되면서 여성이 정보취약집단에서 제외되었음.
 - 이에 따라 정보 관련 법령의 정보 지원 대상에서 여성이 제외되었음. 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에 양성평등한 미디어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매체·정보 관련법을 정비하여 양성평등한 정보사회가 이루어지고 여성의 정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 관련 법개정안
 - 여성가족부도 여성발전기본법과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여성의 정보 이용과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음.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제21조 평생교육, 21조 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21조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조항 등이 성평등의식 교육,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그리고 성인지 교육 등을 실시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이 조항은 매체융합 환경을 반영하여 좀 더 현실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2(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안: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주부, 다문화 가정여성,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디지털 능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과 계획을 마련한다.

제21조의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 ① 양성평등교육,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사업
6.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出刊)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개정안(추가):

10. 취업특성과 정보화 역량을 반영한 여성의 디지털 기술, 콘텐츠 다양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에 정보 접근과 이용에 취약한 사람의 범위에 여성을 포함
 - 건전하고 사회통합적인 정보의 내용에 성평등성을 추가
 - 불법정보의 내용에 성차별, 성폭력적 정보를 포함
 - 관련 위원회에 여성 위원 3분의 1 이상을 명시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 개정안(장애인·고령자·여성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여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여성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여성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여성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여성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강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1.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홍보
- 2.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3.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 4. 정보통신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5.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개정안:(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과 국민통합을 해치는 불건전하고 성, 연령, 지역, 계층 차별적인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강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추가):

- 5. 건전하고 성평등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6.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②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추가): (방송의 여성 역량 강화)

방송은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해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의 이미지와 여성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준·절차)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안:

3. 지역, 세대, 성별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안:

- ③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반드시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기타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라 한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14>

- ②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 ③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제목개정 2011.7.14]

♣개정안:

- ②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반드시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⑥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안:

- ③ 이사회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

통령이 임명하며, 반드시 3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안:

4. 장애인, 고령자, 취약계층 여성 등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 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방송통신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명예 훼손과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안: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성별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방송통신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성별,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③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삭제 <2013.3.23>
- ♣개정안(추가):
9. 지역, 세대, 성별, 장애 등에 따른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 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분야
 2.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개발 분야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관련된 분야
 4.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와 관련된 분야
 5. 방송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 관련 분야
 6. 방송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와 관련된 분야
 7. 방송통신 인력양성에 관련된 분야
 8. 방송통신 표준화와 관련된 분야
 9.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관련된 분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야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개정안(추가):

10. 지역, 세대, 성별, 장애 등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 계층 등의 소외 방지에 관한 분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개정안(추가):

10. 성차별 및 성희롱과 성폭력에 해당하는 정보¹⁾

1) 이 개정안의 내용은 델파이조사과정에서도 전문가 사이의 이견이 첨예하였던 내용으로, 온라인공간에 대한 규제가 음란, 사행성 콘텐츠로 최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안: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반드시 한 명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

소화되는 추이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라는 가치 중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내용임.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이때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상임위원의 한명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만화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상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등에서 양성평등시각에서의 개정이 필요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을 시

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평등 콘텐츠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 ① 정부는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
 2. 제28조에 따른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3.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교육
 4.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개정안:

3.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의 성차별성, 폭력성, 선정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교육

- ② 정부는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 ② 정부는 경제적·지역적·신체적, 성별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 인력 양성)

-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추가):

- ④ 콘텐츠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교육생의 성별, 지역별 비율을 고려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 ① 정부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

-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물의 성차별성, 선정성, 폭력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개정안(추가):

- ④ 게임 제작자들이 건전한 게임물을 제작하도록 제작자 대상 성차별성, 선정성, 폭력성 방지 교육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우수한 만화 및 만화상품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
2.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3. 그 밖에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개정안(추가):

- 4. 만화의 성차별성, 선정성, 폭력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

이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여성 30% 이상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관련 조항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 ③ 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안:

- ② 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이때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안:

- 2.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이때 위촉된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

- 양성평등하고 효율적인 정보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법적 근거 마련

참고자료



이수연·안상수·강혜란(2013). 매체융합 환경에서 매체·정보 이용과 생산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관계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